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91

발의연월일: 2022. 7. 18.

발 의 자:신영대·강민정·김민기

김성환 · 김윤덕 · 박상혁

윤영찬 • 전용기 • 천준호

홍기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을 위해 휘발유, 경유 및 그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규정된 리터당 가격에 따른 세율 조정은 22년 7월 31일을 시한으로 하고 있음.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국의 도시 봉쇄,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63% 이상 급등하고, 국내에서도 석유·경유값의 폭등세가 지속돼 서민 경제와 산업의전반이 흔들리고 있어 기업과 서민경제의 부담완화를 위해 탄력세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시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율 조정의 목적과 취지를 서민과 기업 경제의 안정으로 하고 그 사유에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심화를 추가함으로써 정부가 물가 안정, 국민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다 탄력적으로 개입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법률 제 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운용을"을 "운용과 서민과 기업 경제의 안정을"로,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를 "보전·개선사업, 유가 변동 및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심화에"로, "30의"를 "50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課稅對象斗 稅率) ①・②	第2條(課稅對象과 稅率)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	3
경제의 효율적 <u>운용을</u> 위하여	<u>운용</u> 과 서민과 기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업 경제의 안정을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	
련 사업, 환경의 <u>보전·개선사</u>	<u>보전·개선사</u>
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업, 유가 변동 및 대내외 경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여건의 불확실성 심화에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	
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u>30</u>	
<u>의</u>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	<u>50</u>
정할 수 있다.	<u>의</u>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